2023. 3. 20(월). 10:00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상수 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3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도로점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추가(안 제2조의2)

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안 제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도로법」
- 「도로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결과( '23. 3. 8. ~ 3. 14.)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공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 도로점용 대상 확대와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 개정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과 이에 따른 점용료산정기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나,
-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너무 포괄적인 정의로 조례개정을 통한 순기능보다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많아 개정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3년 3월 15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 선 기

#### 붙임

#### 관계법령

#### ☑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로법 시행령」

-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점용의 목적
  -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 3. 점용의 기간
  - 4. 점용물의 구조
  - 5. 공사의 방법
  - 6. 공사의 시기
  - 7. 도로의 복구방법
  -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 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 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 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